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지역경제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변 호	34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10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의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목 “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”를 “위원회 설치”로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규정에 따라 조문내용 변경함.(안 제4조)
- 나.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 삭제함.(안 제5조~제9조)
- 다. 조문의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문구 정비함.(안 제2조, 제12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사회적기업 육성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4.08.22. ~ 2024.09.11.(20일간)
 - 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 - 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 - 4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연계기업”란을 “연계기업”이란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를 “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상정한다”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설립과”를 “설립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설립·운영”을 “설립 또는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2항 중 “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공무원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
1. ~ 4. (생략)			-----	
5. “연계기업”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6. (생략)		5. “연계기업”이란	-----	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	-----		
1. ~ 4. (생략)		6.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제4조(위원회 설치)	-----	
②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	-----		
③ 위원은 성북구 관계 공무원, 성북구의회 의원,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		---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상정한다		
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		<삭 제>		

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
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
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
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
건에 대하여는 위원에 대하여
제척·기피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
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
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
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
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
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경영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교육훈련 지원 등)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보고 및 검사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

제12조(경영지원 등) ① -----
----- 설립 또는 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교육훈련 지원 등) -----
----- 설립 또는 운
영-----

-----.

제14조의2(보고 및 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공무원이 -----
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장 이동환